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침

제정 2013. 5. 20. 개정 2021. 4. 30. 전부개정 2022. 5. 26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칭한다.)의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법률자문"이란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 등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고문변호사"란 제5조에 따라 위촉되어 진흥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- 3. "소송"이란 진흥원이 당사자(참가인을 포함한다)가 되는 모든 소송(가처분 등 일체의 신청사건, 화해, 조정, 중재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

- 제4조(법률자문 수행) 「직제규정」제4조에 따른 각 부서(이하 "수행부서"라 한다)는 고문변호사 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제5조(고문변호사의 운영) ① 진흥원은 법률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실적·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**제6조(고문변호사의 선정)** ① 진흥원은 법률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.
 - 1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
 - 2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
 - 3. 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
 - 4. 「정부법무공단법」에 따른 정부법무공단
 - ② 진흥원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. 다만,

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나 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- ③ 고문변호사 위촉,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, 업무관련성, 자격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, 진흥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.
- 제7조(고문변호사 위촉의 제한) ① 진흥원은 최근 3년 이내 형사처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진흥원은 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임·직원 또는 그 임·직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수의계약에 의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진흥원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에 앞서 진흥원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고문변호사의 해촉) 진흥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- 2. 수임비리, 금품·향응제공, 청탁 등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3.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
 - 4. 진흥원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경우
 - 5.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6. 진흥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이나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한 경우
 - 7. 그 밖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진흥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

제3장 소송 수행

- **제9조(소송의 수행)** 소송의 수행과 소송대리인 선임,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수행부서가 담당한다.
- 제10조(소송대리인의 선임) ① 수행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이외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있다.
 - 1. 집행정지, 가압류, 가처분, 소제기 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
 - 2. 소송착수금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
 - 3. 「정부법무공단법」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
 - 4. 국가소송, 행정소송 등 검철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소송

- 5.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, 전문성 또는 유사소송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, 수의계약 방식이 적절하다고 진흥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임·직원 또는 그 임·직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없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사건이 특정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특정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의 위임을 연간 3건 이내로 제한한다.
- 제11조(소송비용) ① 소송대리인에 대한 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하며 각 심급을 기준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임보수는 「변호사 보수 규정」(법무부 훈령)을 준용한다.
 - ③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그 보수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위임보수 외에 「민사소송법」, 「민사소송비용법」,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이 정하는 인지대, 송달료, 검증료, 감정료 기타 소송수행 상 소요된 비용 등은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12조(소송의 진행)** 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수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소송사건의 발생 및 대응조치
 - 2. 변론경과
 - 3. 심급별 판결(조정포함) 결과 및 조치내용
 - 4. 소송종결
 - ② 소송대리인은 소제기 및 상소여부, 각종 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, 화해여부, 소취하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수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소송종결 및 후속조치) 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조정, 화해, 중재 등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경우 수행부서의 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.
 - ② 소송이 종결되면 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원리금 지급·회수, 소송비용 지급·회수 및 구상권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의 확정이나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진행경위, 판결내용,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송수행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제14조(소송비용 확정 및 회수)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진흥원 승소(일부 승소 포함)로 확정(종결)된 후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확정(종결)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 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「회계규칙」 중 수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소송비용 회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수행부서의 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진흥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
 - 2.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채무자 회생 및 파산·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)
 - 3.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
 - 4. 상대방이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
 - 5.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소송비용 회수 결정위원회의 의결

- 을 받은 경우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- 제16조(소송현황 등 기록관리)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각 소송사건마다 [별지 제3호 서식] 에 따른 소송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소송이 모두 종결되면 수행부서의 장은 관련 기록물을 「기록물관리규칙」에 따른 기록물관리부서에 통보 및 이관하여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- 제17조(청렴서약서 제출 등) ①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[별지 제1호 서식]청렴 서약서와 [별지 제2호 서식]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시 진흥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진흥원에 알려야 한다.
 - ③ 진흥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,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위촉을 제한하거나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.
- 제18조(법률자문 및 현황 공개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.
 - 1.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법률자문 현황
 - 2. 「수수료 지급지침」제4조제6항에 따라 지급된 법률자문 현황
 - 3.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

부 칙<2013. 5. 20>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4. 30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소송기록부

1. 소 송 제 기				
	구분	1심	2심	3심
① 소제기년월일				
② 관할법원				
③ 사건명				
③ 사건번호				
④ 원고	당사자			
	소송대리인			
⑤ 피고	당사자			
	소송대리인			
⑥ 수행부서				
⑦ 청구취지				
⑧ 사건개요				
2. 심급별 판결내용				
	구분	판결일	송달일	상소일
⑨ 제1심				
판결결과				
⑩ 제2심				
판결결과				
⑪ 제3심				
판	<u>·</u> 결결과			
12비고				
③ 변호사보수 착수금		제1심	제2심	제3심
사례금				

청 렴 서 약 서

법인명(변호사):

사업자등록번호 :

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가. 금품·향응수수, 부당한 알선·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나.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다.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라. 미공개 정보의 이용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.

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○○년 월 일

서약자: (인)

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

정보공개 동의서

□ 공개내용

- 1.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(변호사명, 소속, 위촉기간) 및 법률자문 건수
- 2.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
- 3. 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 - ※ 인적사항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

본 변호사(법무법인)는 「법률사무 처리지침」에 따라 위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○○년 월 일

서약자: (인)

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